

[공문(결제 승인서) 위조 예시]

[공고 제 2025-278호]

계좌이체 결제 승인서

위조 문서

1. 본 고구는 계좌이체를 함에 있어 다음의 계좌이체 약정에 따라 거래할 것을 약속합니다.

추진일자 : 2025년 05월 -


결제승인번호	2025-278호	심사통과 예산액	100,000,000 원
용도명	사제 숙소 병충양교체 건		
공급처	김민규(요한) 어하		
결제방법			
결제금액	440,000	수량	10 (반동시 예산적용)
비고	위 결제 금액은 25. 5. 24. 오후 4시 어제(송금) 예정임		

- (계좌의 조정) 이체방법 등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전 합의 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.
- (수수료의 부담) 계좌이체시 송금수수료 및 통신료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 고구 측에서 부담합니다.
- (계좌승인) 계약자가 계좌에 입금이체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입금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시에 그 구체적인 사실을 통보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.
- (연체) 본 약정서에 명시된 바 대로 대가를 계좌입금한 이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서는 당사는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.
- (신고사항의 변경) 본약정에 기입된 정보에 대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통보하여 계좌이체를 함에 있어 틀림이 없도록 해야합니다.

25. 5. 23.

천주교 마산교구청



담당 : 천주교 마산교구 행정지원 김민규(요한) 행정과장 : 
Mobile : 010-4453-**** / 비공개 , Fax : 0504-047-**** / 비공개
이메일 : asas1322@****.*** / 비공개



천주교부산교구

[공고 제 2025-278호]

위조 문서


계좌이체 결제 승인서


1. 본 교구는 계좌이체를 함에 있어 다음의 계좌이체 약정에 따라 거래할 것을 확약합니다.
추진일자 : 2025년 05월 ~

결제승인번호	2025-278호	심사통과 예산액	200,000,000 원
물품명	스틸그레이팅(루경)150*1000*25 구매 건		
공급처	김민규(요한) 이하		
결제방법			
결제금액	792,000	수량	80 (변동시 예산적용)
비고	위 결제 금액은 25. 5. 17. 오후 4시 이체(송금) 예정임		

- (계좌의 조정) 이체방법 등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전 합의 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.
- (수수료의 부담) 계좌이체시 송금수수료 및 통신료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 교구 측에서 부담합니다.
- (계좌승인) 계약자가 계좌에 입금이체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입금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시에 그 구체적인 사실을 통보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.
- (면책) 본 약정서에 명시된 바 대로 대가를 계좌입금한 이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서는 당사는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.
- (신고사항의 변경) 본약정에 기입된 정보에 대한 변동이 있을때에는 즉시 통보하여 계좌이체를 함에 있어 틀림이 없도록 해야합니다.

25. 5. 16.

천주교 부산교구장 

담당 : 천주교 부산교구 행정지원과 김민규(요한) 행정과장 : 
 Mobile : 010-4453-**** / 비공개 , Fax : 0504-047-**** / 비공개
 이메일 : asas1322@*****.*** / 비공개



천주교 서울대교구

[공고 제 2025-321호]

계좌이체 결제 승인서 위조 문서

1. 본 교구는 계좌이체를 함에 있어 다음의 계좌이체 약정에 따라 거래할 것을 약속합니다.

추진일자 : 2025년 07월 ~

결제승인번호	2025-321호	심사통과 예산액	100,000,000 원
물품명	교구내 화장실(화장지) 구매 건		
공급처	신민기(베드로) 이하		
결제방법	이체(송금) : 우리		
결제금액	2,090,000	수량	50 (변동시 예산적용)
비고	위 결제 금액은 25. 7. 8. 오후 4시 이체(송금) 예정임		

- (계좌의 조정) 이체방법 등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전 합의 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.
- (수수료의 부담) 계좌이체시 송금수수료 및 통신료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 교구 측에서 부담합니다.
- (계좌승인) 계약자가 계좌에 입금이체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입금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시에 그 구체적인 사실을 통보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.
- (면책) 본 약정서에 명시된 바 대로 대가를 계좌입금한 이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서는 당사는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.
- (신고사항의 변경) 본약정에 기입된 정보에 대한 변동이 있을때에는 즉시 통보하여 계좌이체를 함에 있어 틀림이 없도록 해야합니다.

25. 7. 7.

천주교 서울대교구장



담당 : 천주교 서울대교구 행정사무국 신민기(베드로) 행정과장 : 

Mobile : 010-8271-**** / 비공개 , Fax : 0504-314-**** / 비공개